



LPG 충전업 관련 질의 · 회신

산업자원부

LPG산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

1. 해당부지와 붙어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우 이도로의 반대경계가 사업장의 경계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만일 도로와 면해서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경우는, 도로를 넘어 하천까지 경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부지-도로-하천 이렇게 있는 경우 하천까지 설계상 사업부지 경계로 인정이 가능한지

2. 주변에 학교가 있어 상대 정화구역이 되어 있고 해당 지번에 땅이 넓다보니 지번자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나타나 있지만, 해당지번의 아주 일부분만 학교로 부터 200미터 이내이고, 충전소 예정부지는 사실 200미터 밖에 위치해 있는데 이 경우 내용상은 상대 정화구역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지번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지?

분할 없이도 200미터 밖이므로 충전소 건립이 가능한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 부터 200미터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

3. 50미터 정도의 거리 내에 있어서는 안 될 2종 보호시설에 관한 문의로 50미터 내에 조그만 사무

실 건물이 있는데, 거리를 재어보니 벽쪽에 아슬아슬하게 50미터 규정이 걸리는 상황임. 이럴 경우 사무실을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면적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



질의 1, 3에 대한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의 규정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동 지역에는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이 명백하여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아 안전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지와 도로, 하천 순으로 연속하여 접해있을 경우에는 사업소경계를 하천의 반대편 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16)(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이입·충전장

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동 별표 제1호가목(1)(가) 내지 (다)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2배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동 규정에서 보호시설이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무실이 일반적인 사무실이라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연면적 1천m² 이상인 것은 제1종보호시설, 1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것은 제2종보호시설에 해당하고, 100m² 미만인 것은 동 법령의 보호시설이 아니므로 참고바람.

질의 2에 대한 답변

해당부지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공고한 상대정화구역 안일 경우에는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동 충전소 설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구역 안에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 지번 분할 없이 상대정화구역 해지 가능 여부 및 지번 분할 후 상대정화구역 해지 등에 대해서는 동 해당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의 장애인의 “보호자”중**

새어머니(주민등록표상 자(子)로 등재되어 세대를 같이하고, 호적등본상에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처로 등재되어 있음)와 그남편의 친아들이 LPG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새어머니(주민등록표상 자(子)로 등재되어 세대를 같이하고, 호적등본

상에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처로 등재되어 있음)와 그남편의 친아들이 LPG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이해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LPG의 연료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주민등록은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직계존비속의 판단기준은 호적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모와 적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모와 적자와는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LPG승용자동차의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8조
(승계)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 양수, 합병 등 이외에는 승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양수라하면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하여 액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계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또한 임대차계약으로도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 지위를 넘겨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는 동법 제4조의 허가기준 및 허가관청이 정한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및 승계에 있어서 시설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승계 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허가기준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시설 등의 임대차에 의한 승계도 가능할 것이나, 허가관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위승계의 절차는 법령에 따라 허가증과 지위승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의 권리 등을 넘겨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